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282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김기표·복기왕·박희승

이기헌 · 김남근 · 한정애

정준호 · 문진석 · 이연희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1.6.29.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후보지 선정 후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며, 특히 '21.6.29. 이후에 발표된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발표 전에 거래를 한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또한,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자 함.

주요내용

-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나. 공공주택사업자에 공공주택 건설용지 등을 공급받은 자를 포함함 (안 제4조).
-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7).
- 라.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21. 6. 3 0.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특히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

구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일로 추가 확대함. 또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는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0).

- 마.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 신설).
- 바. 제40조의10에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준용규정에서 삭제함(안 제40조의17).
-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6 당 3년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6 년으로 적용하고,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삭제).
- 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승인, 시공사 선정 등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7년 9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8조 삭제).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물보상"이란 제4조(제4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한 공공주택지구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제4조제1항 각 호"를 "제4조제1항 각 호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주택 건설용지 등을 공급받은 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장까지에서 같다)"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토지등소유자"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40조의10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제40조의10제6항·제8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중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를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날"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의7제1항제2호 중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제4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7까지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복합지구"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 ②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의10제8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 정일(「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지 구 지정일)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 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 물보상을"을 "현물보상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를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 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

보상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④ 제40조의7제2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선정일(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같다)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후보지 선정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 후보지 선정일(「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계속 소유한 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후보지 선정일(「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소유한 자
- 3. 후보지 선정일(「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 및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 2.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한다.

- 3. 보상하는 토지등의 가격 산정 기준금액: 건축물의 경우 제40조의 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하고, 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 4. 권리산정 기준: 공공주택사업자가 현물보상을 하는 토지등이 후보지 선정일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가.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나. 동일인 소유(공유지분 소유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주택의 지 분을 분할하거나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 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토지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라.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바. 동일인 소유(공유지분 소유를 포함한다)의 다수의 토지 및 주 택을 각각 분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사.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등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5.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현물보상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현물보상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 열지구인 경우)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토 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1. 토지등소유자가 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로 본다)로서 후보지 선정일(「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전에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
- 2.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하여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 3. 후보지 선정일(「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이후에 발생한 최초의 소유권 변동 또는 보존등기 취득인 경우.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승 계하는 특약을 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인받는 경우에 한한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의 "관계인"에는 제7항에 따라 현물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한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의11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한다.

제40조의1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8조, 제9조"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제5항"을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을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7조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제4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을 "6년"으로 한다.

같은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2024 년 9월 20일"을 "2027년 9월 20일"로 한다.

같은 부칙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적용 시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합지구로 지정되거나 예정지구로 지정된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제40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 제3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10제 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 권 변동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발생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부터 적용한다.
- 제4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후보지로 알린 복합지구의 경우 제40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이전에 토지등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토지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제40조의10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복합지구 또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1.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지정 고시일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경

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지구지정 고시일 전까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 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제2항 및 제3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 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 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 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5. "현물보상"이란 제4조(제4조 <신 설> 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공주 택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협의에 응한 공공주택지구 또는 도심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① 제4 저 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 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 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 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 의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3 조의2, 제44조, 제45조의2, 제48 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 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 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 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 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 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준주택	택의	준용	F) ①	제4
조제1항	각.	호	및 A	<u> 13항</u>	

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 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 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 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② (생략)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 ②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① (생략)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② ----- 공공주택사업 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 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 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 다.

1. ~ 4.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주택 건설용지 등을 공급받은 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 ① (현행과 같음)
 -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 자(제4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 택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장까지에서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 치 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 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 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 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 택지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 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건 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 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 다)할 수 있다.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u>제40</u> <u>조의10제3항·제4항 및 제7항</u>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 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
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
용 등에 대한 특례) ①
<u>토지등소유자</u>
<u> </u>
<u>현물보상을 할 수</u>
있다.

2					<u>저</u>	140
조의]10제	6항・	제8항	및	제1()항

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 ③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 격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11 을 준용한다.
- 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 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제 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 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 지에서 같다)가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 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 지구가 지정 · 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 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	383	조(「건	설산	업기]본	법」	에	대
	한	특	례)	1					
	제4	[조기	제1형	날 제2	호	및	제:	}호,	같
	은	조	제3	<u> 항</u> _					

② (현행과 같음)

구의 지정 등) ① -----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 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 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 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 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1호 이외의 <u>공공주택사업</u>
 <u>자</u>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국토교통
 부장관

<신 설>

•	

- 1. (현행과 같음)
- 2. ----- <u>공공주택사업</u>
 자(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7까지에서 같다)--

②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 (이하 "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u><신 설></u>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자는 지정권자에게 <u>복합지구</u>의 지정·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 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 안할 수 있다. 경우 시·도지사가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 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 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 이 곤란한 경우
- 2.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 상이 후보지 선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 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

<u>4</u>			
		세2항에	띠
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
합지구			

- 1. (생략)
- 2. 복합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복합지구에 위치한 <u>토지 또는 건축물의</u>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를 지정·변경·해제 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u>제2</u> <u>항</u>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
1. (현행과 같음)
2
ヒット・ショ
<u>토지등소유자</u>
<u>⑤</u>
<u>국가</u>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
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
조를 요청
<u>조를 요청</u>
<u>조를 요청</u>

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 에는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 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 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 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 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 정 ·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공 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 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 구"라 한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 정 · 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u>⑦</u>
<u>제8항</u>
<u>8</u>
<u>8</u>
<u>8</u>

한다.

- 1. ~ 3. (생략)
- ① 제6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지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 ⑧ 제1항부터 <u>제7항</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제안의 방법, 동 의자 수 산정방법 등 복합지구 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ㅈ ·② (생 략)

<신 설>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⑨ 제8항	
①제9항	
	
레40구시10/도카드시 추수 도) /	1
세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T)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宁
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	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	
지수용위원회로 한다.	
	テ
④ 제40조의7제2항에 따른 -	<u>우</u>
보지 선정으로 인하여 취득	카
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	<u>었</u>
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	Ò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	工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 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 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 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 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 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 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후보지 선정일(제40조 의7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고한 날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의 시 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 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 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후보지 선정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 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일) 이전에 복합 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 -----현물보상----------.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 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 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 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
 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
 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
 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
 가 정하여 공고한다.
- 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

 정 기준금액: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

- 소유자는 후보지 선정일(「주 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 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 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토지등 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 후보지 선정일(「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건축법」 제2
 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때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계속 소유한 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후보 지 선정일(「주택법」 제63조 에 따른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 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반

-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 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 아 계속 소유한 자
- 3. 후보지 선정일(「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 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 및 이 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을 취득 하여 계속 소유한 자
-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 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 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 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 가 정하여 공고한다.

- 2.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한다.
- 3. 보상하는 토지등의 가격 산 정 기준금액: 건축물의 경우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 으로 하고, 토지의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 4. 권리산정 기준: 공공주택사 업자가 현물보상을 하는 토지

등이 후보지 선정일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나. 동일인 소유(공유지분 소유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주택의 지분을 분할하거나

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 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 라.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 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 가 증가하는 경우

바. 동일인 소유(공유지분 소유를 포함한다)의 다수의 도지 및 주택을 각각 분리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등을 건축하 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현물보상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현물보상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선정일(「주택법」 제63조에따른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 및

<신 설>

건축물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 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1. 토지등소유자가 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로 본다)로서 후보지 선정일(「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전에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 2.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하여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
- 3. 후보지 선정일(「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이후에 발생한 최초의 소유권 변동 또는 보존등기 취득인 경우.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는 투약을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

는 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 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 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 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 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 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 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 를 위반할 때에는 공공주택사 업자는 현물보상등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 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3조제9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 로 한다.

<u>⑥</u>· <u>⑦</u> (생 략)

<신 설>

<u>터 확인받는 경우에 한한다.</u>
⑧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
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
을 체결한 날
현물보상의
<u>⑨</u> · <u>⑩</u>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
⑪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⑧ 제3항부터 <u>제7항</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및 토지의 공급기준 등 <u>현물보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에
는 제7항에 따라 현물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
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
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한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가 포힘
되는 것으로 본다.
①
<u>현물보상</u>
<u>.</u>
ll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힌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

사업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 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 저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 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략)

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서의 준용) ① 복합사업 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제4 항, <u>제8조</u>,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
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띠
로 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세40조	의14(분	후합사	업의	토ス]등소
유자	등에	대한	지원)	1	

- 1. ~ 3. (현행과 같음)
-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비용의 일부 지원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17(도·	심 공	~공주	택	복합	<u>}</u> -
사업에서의	준용)	1			_
					_
제7조부터	제9	조까지	<u>]</u>		_
					_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u>제23조</u>, 제24조, 제25조, <u>제26조</u>, <u>제27조제4항·제5항</u>,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제8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 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 다.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 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 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

; 	제23조부터	제26
조까지		
(2)		
<u></u>		
제6조제3항・>	제 / 하 및 제'	7ス르
	·// 14 7	1上已
ll52조(토지매수		위탁)
① 공공주택/	사업자(제4조	제3항
에 따른 공공	·주택사업자는	<u> </u>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길	<u> </u>

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조 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 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 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일부터 <u>3년</u>간 효력을 가진다.

제4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40조의 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구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날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	(द्	현행:	과 길	날음)			
법률	저	183	11ই	공공	구택	특별	법
		일부	나개경	성법률	부칙		
제2조	<u> </u>	든심	공	공주택	복합	나사업	에
관	한	규7	정의	유효	기간)		
				<u>6년</u> -			
<u><<</u> 2	<u>}</u>	제)	<u>></u>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 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복합지구 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 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 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40조의10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u>2024년 9월 20일</u>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10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9일 다음 날부터 토지등 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u>2027년 9월 20일</u>
<u><삭 제></u>

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